

한국성인교육학회 윤리헌장

제1조

본 헌장은 한국성인교육학회 학회지인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등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지는 물론 학회지와 관련된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회지의 회장 및 기타 임원진은 학회지를 발간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학회지 발간에 있어 투고자, 학회지 회장 및 기타 임원진은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

학회지를 투고함에 있어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학회지 관련 투고 및 심사·자문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 심사자와 투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학회지 관련 투고 및 심사·자문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성인교육학회 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의 발간과 관련된 원고투고 등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윤리적 원칙과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학술지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행해진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게재, 기타 부정행위 등 ‘연구 부적절 행위’를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각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의 유형에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 결과’ 등의 출처를 학술 인용 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2.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 작성 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적절하지 않게 저자가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
3. ‘위조’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수행 방법, 연구 자료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란 이상에서 정의된 연구 부적절 행위 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한국성인교육학회 윤리규정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의 제보와 판정)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는 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제보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단,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상시적으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3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50일 이내에 심의·판정해야 한다.
5.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논문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성인교육학회 윤리규정

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심의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해당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명 기회와 비공개 심의)

1. 위원회는 피심의자에게 위원회의 절차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심의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1. 한국성인교육학회지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한국성인교육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 회보 및 기타 온라인매체에서 논문삭제
3. 한국성인교육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표절 사실 공지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제8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

본 학술지에서는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1.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고논문의 유사도 검사 결과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교육이수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투고자는 투고신청서에 모든 참여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관리한다.